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양지방법원 신설 등〉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96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법원 변경	3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km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km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을 넘어

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Ⅲ. 검토의견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광명시 관할법원 조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개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폐지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과 같이 수원고등법원 관내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며,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명시법원을 안양지방법원 관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폐지(삭제) · 안양지방법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광명시법원 관할 변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안양지방법원)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폐지(삭제) · 안양지방법원 관할구역 규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광명시법원 관할 변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양지방법원)

-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신설되는 안양지방법원, 그리고 소관 법원이 조정되는 광명시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함.

<폐지·신설·조정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폐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	공포 후 3개월
신설	안양지방법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 광명시	
관할 법원 조정	광명시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지방법원)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나. 안양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신설 안양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 중 일부인 광명시를 포함함.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351만 7,080명이며, 신설 안양지방법원의 관할인구는 134만 8,87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1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됨.

<개정안에 따른 안양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 할 구 역	면적(km ²)	인구(명)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특례시, 오산시, 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	1,443	3,517,080
안양지방법원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223	1,348,871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비교>

(2025. 12. 31. 기준)

순위	법원명	인구 수	순위	법원명	인구 수
1	수원지방법원	3,517,080	-	안양지방법원	1,348,871
2	인천지방법원	3,051,96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14,794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08,084	12	부산지방법원	1,278,91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5,140	13	창원지방법원	1,171,858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53,280	14	의정부지방법원	1,067,005
6	대구지방법원	1,898,903	15	청주지방법원	1,048,234
7	대전지방법원	1,881,592	16	전주지방법원	879,852
8	서울동부지방법원	1,748,250	17	제주지방법원	664,792
9	광주지방법원	1,737,252	18	춘천지방법원	424,987
10	울산지방법원	1,453,103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예상 사건 수

- 현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를 기준으로 안양지방법원으로 단순 승격 시에는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16위이나, 개정안과 같이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광명시 관할을 포함할 경우 연간 접수사건 수는 17,888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12위에 해당함.

<신설 안양지방법원 포함 지방법원별 사건 수 비교>

(2025. 12. 31. 기준)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인원수기준)			합계
		합의	단독	소액	합의	단독	치료감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7,684	55,507	118,454	2,590	11,420	9	195,664
2	서울남부지방법원	1,390	12,494	46,531	1,379	7,469	8	69,271
3	인천지방법원	1,194	13,554	24,380	2,403	13,678	4	55,213
4	서울동부지방법원	1,202	10,830	28,011	1,263	5,410	4	46,720
5	수원지방법원	1,738	15,013	11,321	2,267	10,235	8	40,582
6	서울북부지방법원	552	11,052	20,508	1,056	5,375	11	38,554
7	광주지방법원	913	9,526	13,580	1,206	7,530	9	32,764
8	대구지방법원	897	7,734	12,228	1,318	7,541	7	29,725
9	부산지방법원	736	7,932	13,237	1,506	6,294	2	29,707
10	대전지방법원	783	8,091	12,096	1,167	6,457	3	28,597
11	서울서부지방법원	855	8,561	12,446	935	4,829	3	27,629
12	안양지방법원 (광명시 포함)	517.8	4853	8344.8	746	3419	7.6	17,888
13	울산지방법원	430	4,697	7,067	670	4,756	4	17,624
14	의정부지방법원	401	4,315	5,547	875	4,458	2	15,598
15	청주지방법원	366	4,123	5,408	471	4,009	-	14,377
16	전주지방법원	310	4,284	5,514	454	3,129	3	13,694
-	안양지방법원 (현재)	415	3,709	6,461	575	2,502	6	13,668
17	창원지방법원	517	4,200	3,058	629	4,892	2	13,298
18	제주지방법원	309	3,279	3,767	824	3,634	4	11,817
19	춘천지방법원	123	1,326	1,471	450	1,747	-	5,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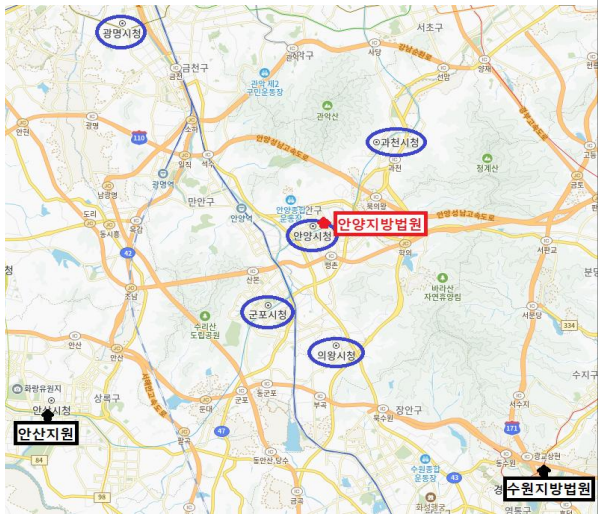
3) 사법 접근성

- 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지에 안양지방법원이 설치된다고 전제할 때, 현재 안양지원 관할구역 주민의 경우는 각 시청에서 안양지방법원까지 자동차로 평균 14분이 소요되나, 수원지방법원까지는 자동차로는 평균 11분, 대중교통으로는 48분 각각 감소됨에 따라 일부 항소심 사건²⁾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개선됨.

개정안은 안양지방법원에 광명시를 관할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분석해 보면, 광명시청에서 안산지원까지는 46분 소요되나, 안양지방법원까지 자동차로는 11분, 대중교통으로는 18분 각각 감소됨에 따라 광명시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됨.

<각 거점지역에서의 사법 접근성 비교>

출발지	도착지	시간		거리 (km)	도착지	시간		거리 (km)
		자동차	대중 교통			자동차	대중 교통	
안양 시청	안양 지방법원	2분	13분	0.7	수원 지방법원	31분	1시간 13분	18.2
과천 시청		16분	26분	5.4		28분	1시간 22분	23.1
의왕 시청		21분	52분	7.7		16분	1시간 16분	12.6
군포 시청		17분	29분	6		26분	1시간 22분	17.3
광명 시청		35분	1시간 8분	14.9		47분	1시간 44분	31
					안산 지원	46분	1시간 26분	25.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함.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설치된 안양지원을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은 그대로 하면서 별도의 지방법원인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인 광명시를 안양지방법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① 신설 안양지방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지방법원 승격을 희망하는 다른 지원과의 형평성, ④ 신규 법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양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주민의 경우 항소심에 있어 사법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광명시 주민의 경우는 안산지원보다 가까운 안양지방법원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남. 다만, 안양지원보다 사건 수 규모가 더 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의 형평성 측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⁴⁾.

3) 2025. 12. 31. 1심 민사·형사 본안 사건수 기준 전국 1위 안산지원(2만 1,101건), 2위 성남지원(1만 9,275건), 3위 고양지원(1만 9,143건)

4) 제21대국회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고양과주지방법원(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221호), 고양지방법원(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425호), 안산지방법원(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900호), 성남지방법원(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204호)

<지원별 사건 수 및 관할인구>

순 위 (사건수)	법 원	민사			형사(인원수기준)			합계	관할인구 (25. 12. 31. 기준)
		합의	단독	소액	합의	단독	치료감호		
1	안산지원(현재)	514	5,720	9,419	855	4,585	8	21,101	1,421,487 (전국지원 중 3위)
2	성남지원	925	7,681	5,391	720	4,558	0	19,275	1,631,079 (전국지원 중 1위)
3	고양지원	611	6,514	6,576	843	4,599	0	19,143	1,586,086 (전국지원 중 2위)
4	안양지원 (관할변경시)	517.8	4853	8344.8	746	3419	7.6	17,888	1,348,871 (전국지원 중 4위)
5	안산지원 (관할변경시)	411.2	4576	7535.2	684	3668	6.4	16,881	1,127,540 (전국지원 중 6위)
6	부천지원	482	5,486	5,693	619	4,192	1	16,473	1,243,588 (전국지원 중 5위)
7	부산동부지원	414	4,399	6,288	501	3,736	5	15,343	967,282 (전국지원 중 12위)
8	부산서부지원	291	3,549	6,676	403	3,825	3	14,747	995,399 (전국지원 중 10위)
9	남양주지원	377	4,332	6,381	314	3,257	4	14,665	977,969 (전국지원 중 11위)
10	안양지원(현재)	415	3,709	6,461	575	2,502	6	13,668	1,054,924 (전국지원 중 7위)
11	천안지원	392	4,090	5,147	477	3,404	4	13,514	1,023,700 (전국지원 중 8위)
12	대구서부지원	262	3,207	5,787	466	3,526	2	13,250	1,006,061 (전국지원 중 9위)
13	평택지원	351	3,700	5,106	552	3,524	3	13,236	806,994 (전국지원 중 13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20억 9,400만원 (연평균 총 24억 1,900만원)으로 추정됨.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광명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경우, 광명시 안양지원 관할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관할인구 및 면적, 사건 접수 등의 측면에서 안양지원보다 규모가 큰 성남지원 또는 고양지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 개정안에 따라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억 9,800만원, 2030년 25억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억 9,400만원(연평균 24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양지방법원 신설	인건비	1,853	2,278	2,334	2,393	2,451	11,309	2,262
	기본경비	106	130	133	137	140	646	129
	자산취득비	139	-	-	-	-	139	28
합계		2,098	2,408	2,467	2,530	2,591	12,094	2,419

주: 현행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및 광명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보수·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다만,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판사 증원, 청사 신축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으로 함